

토목안전작업 절차서

항만공사

해상작업의 공통사항

CODE No : KISA - A07 - 001

1. 기상, 해상

- 1) 기상통보 및 조류의 변동상황을 매일 기록하고 분석 판단하여야 한다.
- 2) 전파관계 법규를 숙지하고 통신일지, 항해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3) 작업현장의 해상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.
- 4) 작업선의 파고에 대한 가동한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.
- 5) 주의보등 현장연락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체제이어야 한다.

2. 위험물, 매설물

- 1) 작업수역에 가스관, 수도관, 전력케이블 등 매설물이 없는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한다.
- 2) 잔존 기뢰 등의 위험이 있는 수역에 출입하는 선박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 수심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3) 하천류, 조류 등으로 토사의 이동이 심한 수역에서는 공사별로 자기탐사에 의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3. 항행제한

- 1) 특정 항내에서 정해진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관할 항만청이 신호소에서 교통정리를 위하여 행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.
- 2) 특정 항내에서 일정 크기 이상의 선박은 관할 항만청에 수로항행의 예정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3) 항로제한 등의 고시가 있을 때는 빨리 관계 선박에 알려야 한다.

4. 표지

- 1)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선에 형상물, 표지를 하여야 한다.
- 2) 야간작업시 표지 등을 완비하고 조명은 충분하여야 한다.
- 3) 망루, 우물통 등을 설치시에 점멸 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4) Anchor, 해중의 위치물 등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5. 피난연락

- 1) 강풍, 태풍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피난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.

- 2) 피난시의 예인선 등을 미리 수배하여야 한다.
- 3) 피난시의 경계체제 및 연락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.
- 4) 피난작업시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5) 피난지에서 타선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.
- 6) 사고발생시의 대책을 미리 계획한다.

6. 적재제한

- 1) 운반선의 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2) 적재물이 선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.
- 3) 기상 및 해상의 상황에 따라 적재하물을 제한하여야 한다.
- 4) 하물적재시 편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5) 선체의 동요로 하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7. 해중 추락방지

- 1) 해상작업에 적당한 작업복, 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2)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3) 고·저혈압, 심장병환자 등은 해상작업에 투입시키지 않는다.
- 4) 작업선에 오르내리는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5) 출입로 및 통로에는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질 물체를 제거하여야 한다.
- 6) 야간작업시의 조명은 충분하여야 한다.
- 7) 2대 이상의 작업선이 편성되어 작업할 때는 상호간에 간격이 없도록 단단히 연결하고 그 사이를 적절히 덮어서 안전하게 한 다음 작

업한다.

- 8) 파랑이 높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상황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점검한다.

8. 구명·소화설비

- 1) 작업현장 및 작업선에 구명구, 망, 대나무장대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.
- 2) 작업선의 구명동의는 정원수대로 비치하여야 한다.
- 3) 선체의 누수나 동력펌프, 구명기구 등을 수시 점검한다.
- 4) 승선인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- 5) 작업선에 소화기는 충분히 비치하여야 한다.
- 6) 작업선에 구급약품 및 탐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7) 무전기, 조난신호자동발신기, 불꽃 등 긴급연락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8) 연락용 통신을 상비하여야 한다.

9. 기 타

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구명조끼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) 물에 떠 있는 송유관, 부표, 뗏목이나 떠있는 발판 위
- 2) 기계시설을 갖춘 배로서 뱃전, 난간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갑판 위
- 3) 적절한 난간 또는 안전그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물위나 물 근처로 뻗어있는 구조물 위
- 4) 다른 안전보호장치에 관계 없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야간에 혼자 작업할 때
- 5) 익사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